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결정

사 건 86호 115, 116 재정신청

신청인 1. (고소인)

권 인 속 (權仁淑) 무직

주거 [REDACTED]
(현재 인천소년교도소 재감중)

대미인 별지와 같아.

2. (고발인)

(1) 고 영 구

주소 [REDACTED]

(2) 김 상 철

주소 [REDA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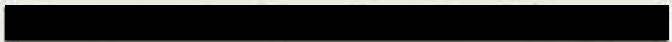
(3) 박 원 순

주소



(4) 이 른 명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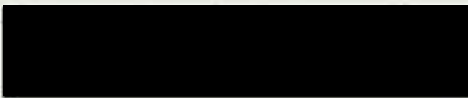
(5) 이 상 수

주소



(6) 조 영 희

주소



(7) 조 준 희

주소



(8) 용 성 우

주소



(9) 황 인 철

주소

의 의 자 1. 문 귀 동 (文 貴 童) 전직경찰관

주거

2. 한 의 정 (韓 壽 正) 경찰관

주거

3. 황 병 선 (黃 炳 善) 경찰관

주거

4. 옥 봉 환 (玉 鳳 煥) 전 부천경찰서장

주거

5. 박 성 동 (朴 成 龍) 경찰관

[REDACTED]

주거

[REDACTED]



6. 이 동 기 (李 興 基) 경찰관

[REDACTED]

주거

[REDACTED]

불기소결정 인천지방검찰청 1986. 8. 19.자 86형제 19825,

19970호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재정신청이유의 요지는, 피의자 육봉

환은 부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1986. 7. 16자로 직위

해제된 자이고, 피의자 박성동은 경위로서 같은 경찰서 수사과 조사

계장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날짜에 직위해제된 자이며, 피의자 문기봉

은 경장으로 같은 경찰서 수사과조사계에 근무하다가 같은날짜에 파면

된 자이고, 피의자 한희정, 같은 황병선, 같은 이흥기는 위 경찰

서 수사과 형사계 소속 순경들로서,

1. 피의자 문귀동은,

가. 1986. 6. 6.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부천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고소인 권인숙 (여, 21세)

을 상대로 5. 3. 인천소요사건 관련 수배자의 소재를 조

사하면서 그녀에게 위 수배자 중 아는 사람의 이름과 소

재를 밝히라고 추궁하였으나 그녀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

녀의 자켓과 남방셔츠를 벗게한 후 젖가슴을 들추어보고

다시 그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작렬 풀어내린 다

음 상피의자 이용기 순경을 불러 입피시킨 가운데 계속 추

궁하여도 여전히 불응한다는 이유로 옷위로 그녀의 젖가슴

을 3,4회 주무르면서 위 이용기에게 "고추가루를 가져와"

라고 말하여 마치 고추가루를 고든을 할 것처럼 협박하

는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미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나. 같은해 6. 7.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경

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1호 조사실에서 위 권인숙을 상대

로 위와 같은 내용을 조사하던중 그녀에게 "이제까지 네

가 말한 사실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됐어, 토요일저녁

쉬지도 못하고 너를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다시 출근

했잖아, 너의 자취방에 찾아온 년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추궁하였으나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자 그녀로 하여금

자켓과 남방셔츠를 벗게한 후 상피의자 한의정, 같은 황

병선을 불러 그녀의 양손을 동위모하여 수갑을 채우고 양

쪽 오금에 나무막대기를 끼워 꿰어앉힌 후 나무막대기로 그

녀의 허벅지와 허리부위를 수회 구타하고, 다시 그녀를 수

갑을 채운채 제2호 조사실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계속하

면서 그녀의 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상의를 올

린후 그녀의 젖가슴을 주르르다가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음

부름 받치고 그녀의 머리와 편지를 부름 밑으로 끌어 내
 인후 그녀를 책상에 엮드리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대고 수취 비비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
 조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리의
 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2. 피의자 안희정, 같은 광병선은

1986. 6. 7. 21:00경 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1호 조사실에서 상피의자 문귀동이 위 권안숙
 을 조사할 때 위 제1항 나호 기재와 같이 그녀의 양손을
 동뒤로 하여 수갑을 채우고 양쪽 오금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
 끌어안힌 후 그녀의 허벅지 및 허미를 나무 막대기로 수취 구
 타하는등 가혹한 행위를 하였으며,

3. 피의자 육봉환은

1986. 6. 6. 04:00경 같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위 권안숙에
 예게 "건양, 너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면서

위 권인숙과 함께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던 최옥자
 박희숙도 위 권인숙이 자신들에게 경찰관들로 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하였으나 성기를 얻어 음부에 비비는등의
 수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상황을 보더라도 위 제2호 조사실은 폭폭에 가로 1.75미터,
 세로1.95미터의 유리창문 1개가 있고, 서쪽에 같은 크기의 유리창문
 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쪽 유리창에서 12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
 는 부기고에 200와트짜미 외등이 켜져있고 그알을 매시간마다 2인
 1조의 순찰조가 순찰을 돌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조
 사실과 조사실사이의 칸막이는 두께 5센티미터 가량의 석고보드로 되
 어 있어 열방에서 마자치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인데
 이러한 곳에서 허위진술을 계속하는 피조사자를 상대로 엄문을 하던
 조사자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그토록 저열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
 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수궁하기가 어터물론 아니마

상피의자 문귀동에게 위 제1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권인숙
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여 위 문귀동으로 하여금 위와같은 가혹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고,

4. 피의자 박성용은

1986. 6. 7. 09:00경 위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실에서 위
권인숙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권양, 오늘부터 대우가 달라져"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수사경험이 많은 상피의자 문귀동에게 "오늘부터 그런 방법으로
조사해"라고 지시하여 위 문귀동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혹행
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으며,

5. 피의자 이흥기는

1986. 6. 6. 04:0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위 경찰서 수
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상피의자 문귀동이 위 권인숙을
조사할때에 입회하여 위 문귀동이 "고추가루 물 가져와" 라고 하
자 이에 호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 문귀동의 가혹

행위가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는 바,

고소인 권인숙의 검찰에서의 진술, 참고인 이향숙, 같은 피의자 같은 박희숙, 같은 김철환, 같은 김혜성 등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위 피의자들이 검찰에서의 각 일부진술과 검사의 실태조사 결과 등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의자들의 피의사실은 그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들의 변명만을 받아들여 피의자 본기동에 대하여는 일부사실만 인정한 후 기소유예처분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혐의 없다고 판단 하였으니 검사의 위 피의자들에 대한 1986. 8. 19. 자 불기소결정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제정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자들에 대하여 차예대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피의자 본기동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의자의 검찰에서의 일부 자백, 고소인 권인숙의 검찰에서의 진술, 상피의자 이동기의 검찰에서의 일부진술 및 참고인 피의자, 같은 박희숙, 같은 김철환, 같은 이향숙, 같은 김혜성 등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진술

기타 수사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피의자 문귀동
의 이 사건 피의사실증

피의자 문귀동이

가. 1986. 6. 6. 04:20경부터 06:30경 사이에 부천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5호 조사실에서 위장취업과 관련하여 공문
서변조, 동행사 등 피의자로 연행된 피해자 권인숙을 상
대로 5. 3. 인천소요사태 관련 수배자 양승조 등과의 관
련 및 그들의 소재에 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녀에게 위
수배자 중 아는 사람의 이름과 소재를 밝히라고 추궁하였으
나 그녀가 모른다는 대답에 응하지 않자 자켓과 남방셔어
츠를 벗게한 후 젖가슴을 들추어 보고, 그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풀어내린 다음 같은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근무 순경인 상피의자 이용기를 불러 입회시킨 가운데 그녀
에게 화난소리로 "이년", "저년", "웃버어" 등 폭언을 하
고 "5. 3. 사태 관련 여자아이들도 나한테 걸리면 금방

다 자백했어"라고 은근히 진술을 강요하면서 위협을 하여도
 불응하자 그녀의 티셔츠 위로 젖가슴을 3,4회 만지고
 위 이통기 손경을 향하여 "이년 안되겠군" "고수가루를 자
 겨와"라고 말하여 마치 고수가루물로 고문을 할 것처럼 위
 협하는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범경찰미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
 위를 하고,

나. 같은해 6. 7. 20:30경 위 같은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제1호 조사실에서 위 권인숙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그녀에게 "이제까지 네가 말한 것은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됐어, 토요일 저녁 쉬지도 못하고
 너를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다시 출근했잖아, 너의 자
 취방에 찾아온 년이 누구야? 하고 하면서 주궁하였으나 "
 죄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식회사 오동에 근무하는 사람
 이라고만 말할 뿐 그의 거처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대답하자

그녀의 자켓과 남방셔츠를 벗겨한 후 건너편 제3호조사실
 에서 일하던 순경 김해성에게 수갑을 가져오게하여 위 권
 인숙의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고 "거짓말 하지 마
 타"며 고함을 지르고 그녀를 세면바닥에 무릎 꿇게 하다가
 약 30분후인 그날 21:00경 위 제1호 조사실과 바로 붙은
 위 조사계 복서쪽 구석에 있는 피고인의 방인 제2호조사
 실로 그녀를 끌고가 그때부터 그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불도켜지 않아 실내가 어둡고 약 12미터 떨어져 있는 무
 기고알 외등의 불빛에 의하여 겨우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방안에서 단둘이서 피고인은 북쪽으로 난 피고인의 책상
 옆 창가에 앉아 위 권인숙을 가까이 오라고 하여 그녀의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민 후 자기 바토 앞에 놓여있
 는 점제의자에 그녀를 앉게하고 그녀 가까이 다가 앉으면서
 그녀의 상의를 모두 올리고 양손으로 젖가슴을 만지면서 "
 간첩도 결국은 본다, 니같이 독한 녀은 처음 본다"고 하면

서 "희영"의 집을 데리고 하였으나 그녀가 정말 모른다면
 서 신음소리를 내자 "신음을 내면 아무도 없는데 무슨소용
 이 있느냐"고 겁을 주고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허벅지부분
 과 상체를 어루만지는등 추행을 함으로써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사법경찰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실 이외에 피의자 문귀동이 1986. 6. 7.

21:00경 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권인숙을 조사하던중 상
 피의자 한희정과 황병선 순경을 불러 그들과 함께 그녀의 양팔을 등
 뒤로하여 수갑을 채우고 양쪽오금에 나무막대기를 끼워 꿰어 앉히고
 또 막대기로 그녀의 허벅지와 허미부위를 수회 구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 문귀동이 당시 제3호 조사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순경 김해성으로 부터 수갑을 빌려 위 권인숙의 양팔에 수갑을 채
 우고 조사하고 있을때 위 한희정과 황병선등이 들어와서 수배자 사
 진첩을 제시하고 수배자중 아는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간 사

실이 있을뿐 그들이 위 권인숙을 나무탁대기로 구박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극구 변소하고 있고, 위 한희정 및 황병선도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권인숙도 나무탁대기로 구박당한 사실은 있으나 누구로부터 구박당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녀의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 피의자 문귀동이 1986. 6. 7.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권인숙을 조사하던중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커내어 그녀의 음부에 대어 수회 비비는등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은 위 피의자가 고백한 사실이 없었다고 극구 주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위 권인숙을 조사하던 제2호조사실과 인접한 제3호 제5호, 제7호 조사실에서 각각 일을 하고 있었던 위 경찰서 조사계에 근무하는 김혜성, 권오성, 박정현등도 당시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면서 제2호조사실 앞을 왕래한 바 있으나 위와같은 사실을 목격하거나 감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권인숙은 문귀동으로부터 주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행을 당할
 때 반항하거나 소리를 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조사후에도 일체 항
 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점 또한 상식상 납득할 수
 없으므로 고소인 권인숙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가 어렵다 하겠다.

피의자 문귀동의 이 사건 피의사실을 앞에서 인정되는 사실부분은
 독지가폭행위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제 9조가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간의 존
 엄과 가치"를 근본규범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형사피의자를 위협하고 특
 히 여성으로서의 성적수치심을 자극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
 하는 위와 같은 인권침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다
 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응징하여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 문귀동이 직무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위 피의자 또한 처음에는 자신의 병역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가 몸담고 있는 경찰기관 및 상사에게 누가기침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그후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용서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의자가 10여년간 어머니와의 표창을 받으며
 충실히 봉직하여 온 경찰관의 직에서 파면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위 피의자가 그동안 이 사건으로 인한 비동한 여
 론과 피의사실로 인하여 형벌에 못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짐작이 가고 이만한 사건으로 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에서의 고문등 인권침해사태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고
 해지고 인신구속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에게 커다란 경각
 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범죄인에 대한 용보나 특별예방이외의
 또 한가지 주요한 형벌의 목적인 사회일반인에 대한 일반예방적효과
 도 상당히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의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기소권의 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하에서 검사가 위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음 피의자 한희정, 같은 황병선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1986. 6. 7. 20:30경 상피의자 문기동 경찰의 방인 조사계 제
2호조사실에 5. 3. 인천사택 수배자 소재수사를 위해 수배자 명부와
사진첩을 들고 들어가서 위 문기동 경찰의 입회 아래 약 30분간 고
소인 권인숙에게 수배자들의 사진을 하나씩 들추어 보이고 누군지
아느냐고 추궁해 나가다가 위 권인숙이 그중 위장취업관계로 연행
된 김철환 한 사람만을 알아보고 그 나머지는 모른다고 대답하자
두사람 모두 그대로 조사실을 나와 버렸을 뿐 위 권인숙의 양손을
동태도 들어 수갑을 채웠다거나 그녀의 양쪽 오금에 나무턱대기를
끼워 끌어 앉히고 또 막대기로 그녀를 구타한 일은 결코 없다고

국구 변호하고 있는 바 위 문귀동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
합하고, 고소인 권인숙 자신도 당시 실내가 어둡고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그 당시 자기를 구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그 두
사람중 누가 어떻게 구박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권인숙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결과 그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다음 피의자 옥봉환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권
인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의자가 1986. 6. 6. 04:
00경 위 경찰서 상황실에서 고소인 권인숙에게 "권양, 너무 수사
에 협조하지 않는군" 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는 가혹행위를 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 수
사기록을 두루 살펴봐도 그가 상피의자 조사계장 박성용 경위를 통
하여 아니면 상피의자 문귀동 경장에게 직접 위와 같은 불법적이고

을 수사경험이 많은 상피의자 문귀동 경장에게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상피의자 문귀동이 위 제1항 가호 기재와 같이 위
 권인숙을 조사하여 "김성은"과 "이항숙"이란 이름을 알아내어 그날
 13:00경 형사 2명으로 하여금 서울 봉천동에 있다는 김성은의 소
 재와 인적사항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5. 3. 인천사태의 수배자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또 그 다음날인 6. 7. 09:00경 위
 경찰서 1층 조사계장실에서 상피의자 문귀동, 위 정오도 경사 등이
 입회한 가운데 위 권인숙의 진술에 따라 해먹은 위 이항숙과 위
 권인숙의 자취하는 집 주인 아주머니를 위 권인숙과 상호 대질시
 켜으나 집 주인 아주머니가 위 권인숙의 방에 출입하던 여자가 위
 이항숙이 아니라고 말하자 심히 분개하고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위
 권인숙을 향하여 "권양, 오늘부터 대우가 달라져" 라고 말한 사실
 은 인정되나 그 당시 조사계장실에서 고소인 권인숙등과 대질하기
 위하여 함께 있던 그녀의 대학친구인 위 이항숙은 대질시 문귀동
 경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때 피의자 박성용이 그러한

강압적인 방법으로 위 권인숙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여 위 문귀동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거나 탐비 위 문귀동의 가혹행위에 가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검사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결과 그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다음, 피의자 박성용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의자 박성용은 상피의자 문귀동에게 "오늘부터 그런 방법으로 조사해"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문귀동도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수사기록에 의하면

원래 고소인 권인숙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 등 피의사건은 같은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경사 정오도의 담당사건이었는데 조사계장인 피의자 박성용은 1986. 6. 6. 04:00경 위 경찰서 3층 상황실에서 경찰서장인 상피의자 옥봉원이 위 권인숙에게 "권양, 수사에 너무 협조하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위 사건

말을 하는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피의자의 변호와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설사 고소인 권인숙의 진술에
로 위 피의자가 "오늘부터 그런 방법으로 조사해"라고 말하였다
할 지라도 "그런방법"이 바로 위와같은 내용의 가혹행위를 뜻하는 것
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달리 위 피의자가 상피의자 문귀동에게 가
혹행위를 고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결과 역시 그 혐의가 없다고 하여 불
기소결정을 한 것은 상당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피의자 이흥기의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살펴건대
고소인 권인숙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의자 이흥기의 검찰에서의 진
술, 위 문귀동의 검찰에서의 일부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 이흥기는
수사과 형사계에 근무하는 순경으로서 1986. 6. 6. 02:50경 비상
소집되어 근무중 그날 04:50경 상급자인 상피의자 조사계 경장 문
귀동으로부터 잠시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제5호 조사실에 가서
위 문귀동이 고소인 권인숙을 조사할 때 잠시 입회하고 있다가 위

문기동이 위 권인숙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위 피의자에게 "이년 안되
 겠군", "고추가루를 가져와" 라고 말하자 그냥 나와 버리고는 다시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의
 자는 경력도 얼마되지 않은 순경으로서 그의 상급자이고 경력이 용
 부한 수사관인 위 문기동경장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제지할
 수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때 위 피의자가 문기동
 경찰의 지시에 따라 위 문기동이 고소인 권인숙을 조사할 때 불과
 몇 분간 입회하다가 그의 "고추가루를 가져와" 하는 화난소리를 듣고
 바로 나와버린 사실만 가지고 위 피의자가 상피의자 문기동의 고소
 인 권인숙에 대한 가혹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위 문기
 동이 범행경의를 굳게하여 그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결과 그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결
 정을 한 것도 역시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결국 위 피의자들의 각 피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제정신청은 모두 이유없이 받아

틀릴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제 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6. 10. 31.

재판장 판 사 이 절 환

판 사 오 형 남

판 사 손 기 식